고용노동부

보 도 자 료



▸ 보도일시: 2018.1.30(화) 조간 <인터넷> 2018.1.30(화) 10:00 ▸ 총 2 쪽	❖ 고용노동부강릉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과 장 신승기 주무관 홍두기 ☎ 033-650-2516
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/gangneung/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강릉고용노동지청, 설 대비 체불청산 집중 지도 실시

- 1.29.~2.14. 3주간「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」운영 -

□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1.29.부터 2.14.까지 「**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**」을 운영한다고 밝혔다.

○ 이 기간중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서는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「**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***」**을** 운영하여 고액·집단 체불사건들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, 근로감독관들은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, 휴일에도 오전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**비상근무**를 실시한다.

* 기동반: 근로개선지도과장(반장), 근로감독관(반원)으로 구성·운영

□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집중지도기간 중 **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해,**

○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,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을 선정하여 **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,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도 병행**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위 집중 지도기간 중 신고된 체불사건에 대해서는 체불사건 접수 즉시 ①유선확인 후 청산지시, ②현장조사 후 지급지시, ③미지급시 입건, 사법처리의 순서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.

○ 특히, 체불임금 **1억원 이상 고액 체불임금**과 **10인이상** 집단체불에 대해서는 지방 관서장이 **직접 지휘·관리하고,**

- **3천만원이상,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에 대해서 「체불임금 청산 기동반」**을 운영하여 **반장이** 직접 **현장대응 처리할** 방침이다.

□ 이와 함께,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와 **체불사업주융자, 노동자생계비대부 제도 등을 집중 홍보**할 계획이다.

<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대책 내용>

체불사업주 융자	▪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 * 융자한도 인상(1.24.부터 시행) : 최고 5천만원 → 최고 7천만원 * 이자율 인하(1.29~2.28) : 신용·연대보증(3.7%→2.7%), 담보제공(2.2%→1.2%)
근로자 생계비 대부	▪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 대부 지원 * 이자율 인하(1.29~2.28) : 연 2.5%→1.5%,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

□ 장영조 강릉지청장은 "2017년 강원 영동지역의 체불금품은 8,522백만원으로 2016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지만, 동계올림픽 관련시설 건축 등으로 건설 현장에서의 임금체불이 많이 늘었는데,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체불금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등을 지도할 예정이고,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**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**"고 밝혔다.

□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유선전화(033-650-2543) 접수 및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방문을(강원 강릉시 경강로 1991) 통해 신고를 하면 되고, 사업주 저리융자 및 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은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 경영복지팀(033-640-9141, 9113)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강릉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관 홍두기(☎ 033-650-251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